



대학입학공정관리대책위원회 규정

제정일	1997. 6.19
개정일	2021. 9. 1
개정차수	9차
담당부서	기획예산과

- 제 1조 (목적) 이 규정은 동서울대학교 신입생 모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대학입학공정관리대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2조 (설치) 위원회는 총장의 자문기구로 설치 운영한다. (개정 2009. 2.13)
- 제 3조 (구성) ① 위원회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하며, 당연직 위원은 기획처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. (개정 2017.10. 1)
-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된다. (개정 2009. 2.13, 2014. 5. 1, 2017.10. 1)
- ③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의 경우 보직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의 경우 2년으로 하며 중임 할 수 있다. (개정 2017.10. 1)
- ④ 위촉직 위원이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위원과 중복될 경우 변경 위촉하여야 하며, 변경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. (신설 2017.10. 1)
- 제 4조 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회의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, 회의를 소집한다.
- 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.
- 제 5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분석 검토 심의 의결한다.
1.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개발
 2. 대학 입학 부정방지 대책수립 및 시행
 3. (삭제 2021. 9. 1)
 4. 수험생의 이의제기에 대한 내부 심사
 5. 대학 입학전형의 자체 감사 실시 (개정 2015. 7. 1)
- 제 6조 (회의 및 의결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한다.
- ② 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 (개정 2020. 1. 1)
- 제 7조 (사무관장) ① 위원회의 사무는 기획처에서 관장한다. (개정 2014. 3. 1, 2014.11. 1)
- 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기획처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. (개정 2014. 3. 1, 2014.11. 1)
- 제 8조 (운영세칙)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없는 것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7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5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